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9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김동아

김성환 · 정동영 · 문정복

김문수・복기왕・조계원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 3년부터 해당 주민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풀뿌리 민주 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 구심체 역할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안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 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자치 회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기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둘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위탁할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위탁할수 있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위탁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5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 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
- 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